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9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동대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사업 운영 관련 재료비, 예산, 서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1) 「지방자치법」
-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28. ~ 2022. 10. 18.): 의견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규제사전심사: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 제3조(대상자)에 제6호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추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동대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의 운영)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6조(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료비)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제3조의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등 관리)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구민들이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 소요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매년 인건비 인상률과 재료비 구매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구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1,498,468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합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인 건 비	234,367	234,367	234,367	234,367	
운 영 비	95,000	99,600	105,000	110,100	
재 료 비 등	64,000	26,400	29,000	31,900	

※ 산출 근거

- 1) 인건비: 운영인력(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다급 1명)
- 2) 운영비: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 3) 재료비: 서비스물품 재료구입비 및 센터 조성비(2023년만 40백만원 반영)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계
구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1,498,468

6.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과장 김성태

(담당: 사회7급 이현우 / ☎ 2600-644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2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동대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사업 운영 관련 재료비, 예산, 서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2			
정책명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현우	전화번호 02-2600-64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2.성별특성과 관련한 의견으로 해당 조례안 제3조에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바 '조손가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활민원처리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여야 함. ○조손가정은 사전적 의미로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 것임. 조손가정은 경제적 취약성과 더불어 열악한 건강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 2018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조손가정은 11만 3천297 가구이고, 서울이 2만 211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조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주거의 노후화로 양육에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함. 또한 해당 조례는 제3조제4호에 한부모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조손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세종시와 거제시, 강화군 조례에서도 대상자에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조(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합검토의견 참고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p> <p>5. 65세 이상 독거노인</p> <p>6.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p> <p>5. 65세 이상 독거노인</p> <p>6. <u>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u></p> <p>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22년 10월 26일 까지</p>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p> <p>자치행정과장 귀하</p>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 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